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행 정 권 한 의 위 임 및 위 탁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세청장의 권한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 임용권의 위임범위를 일부 변경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법무부 소속기관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장이 민간위탁하여 수행하던 사무 중 소관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민간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사무 위임범위 변경(제20조)

관세청장 소관 권한 중 5개 세관장에게 위임한 6급 및 7급 공무원 임용권을 6급 공무원 임용권으로 변경(제20조)

나. 법무부장관 권한의 위임기관 명칭 변경(제23조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명칭을 변경

다. 기획재정부장관 권한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규정 정비(제44조제1항 삭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업무 민

간위탁 사무를 협동조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관련 조항 삭제

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규정 정비(제46조제1항 삭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온천자원 관측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를 온천법에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관련 조항 삭제

마. 특허청장 권한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규정 정비(제51조 삭제)

변리사시험 관리업무, 변리사 등록·취소업무 민간위탁사무를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관련 조항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특허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6급 및 7급”을 “6급”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서울·부산·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 3. (생략) 4. <u>6급 및 7급</u> 공무원의 임용	제20조(관세청 소관)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6급</u> -----
제23조(법무부 소관) ①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u>치료감호소장</u>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③ ~ ⑥ (생략)	제23조(법무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u>국립법무병원장</u>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기획재정부 소관) ① 기획재정부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업무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생략)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②·③ (생략)

제51조(특허청 소관)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및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한

제44조(기획재정부 소관)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10조
에 따른 등록 업무

2. 삭제

3.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의
거부

4.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5. 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
납

6.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신
고의 수리

7.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
록취소의 공고

8. 법 제6조의3제2항, 영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
관변경 인가신청의 접수

9.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신
고의 수리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7